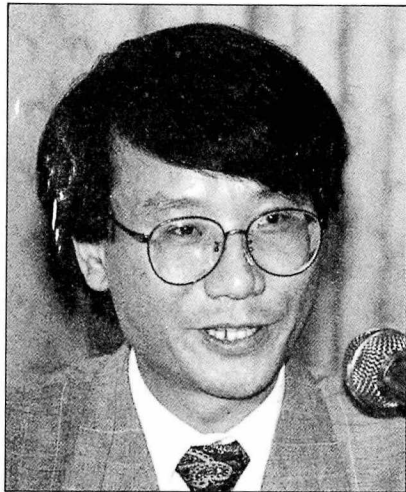


# “만화문화의 自淨능력 적극 유도해야”

이원복교수 「한국만화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 주장



이원복교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1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용 외국만화의 번역·출판시 이를 사전심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6인으로 구성된 만화심의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몇년째 외국만화, 특히 일본만화의 무분별한 범람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같은 사전심 의는 외설·폭력적인 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 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외국만화의 수입을 정 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해석도 낳는다.

사전심의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이 용되었던 이원복(덕성여대 산업미술과) 교수 의 최근연구 「한국 만화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두 부 문에 대해 간략히 요약, 소개한다.

## 일본만화의 유입과 문제점

일본만화는 다른 외국의 만화들과는 달리 우리 만화와 매우 흡사하고 정서나 문화면에 서도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없이 우리 시장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 만화의 한국만화시장에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시장이 전면개 방되면 우리의 만화시장은 초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작가들의 상황과 세계제일이라 할 만큼 방대한 만화시장에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 며 작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일본만화 작가들은 그 처지가 매우 다르다. 따라서 공개 경쟁할 경우 환경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 만화에 비해 내용의 충실도나 완성도에서 뒤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몰려들 일본만화는 시장개방 문제와 더불어 신중히 검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일본만화의 국내유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러기보다는 내용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일본적 사상과

일본적 문화이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 들여올 때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관에

어긋나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만화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던간에 그 속 에는 제작자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 독자는 무의식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월 트 디즈니의 천진무구한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에는 미국식 사고와 이념이 깔려 있다. 그것이 지배이데올로기라면 멕시코의 만화가 리우 스의 작품은 이에 정면배치되는 반제국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념을 담고 있다. 이렇듯 만화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재미’로 포장되어 독자들 에게 무저항 흡수된다는 데 우리가 일본만 화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일부에서 무조건 일본만화의 내용을 비판하 고 배격을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일본 만화는 어디까지나 일본문화의 산물인 만큼 일본만화가 불량·저질이라 함은 곧 남의 나라 문화를 불량·저질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 도이다. 일본에서 유입되는 만화의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일본적 사상’과 ‘일본적 문화’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 지 않는 상태 그대로 국내독자에게 전달될 때 야기되는 문화침투가 우려되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만화, 특히 일본만화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치관에 어긋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독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일본만화 유입현황은 2차대전 직후의 유럽과 비슷하다. 당시 기반이 취약하 던 유럽만화시장에 대거침투한 미국만화는 유럽 의 아동·청소년들을 일시에 사로잡았고, 이는 곧 사회문제화되어 유럽 각국 정부가 자국 의 문화보호적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수립 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경우 1949년 7월16 일 법령제49956호에 의해 외국만화 특히 미국 만화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

법령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외국에서 유 입된 만화를 판매·유통시킬 때는 반드시 공 보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이 법령을 위반, ‘청소년에게 해로운’ 미국만 화를 제작·판매한 리용의 한 만화출판업자가 1개월 구류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영국도 미국만화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1954년 의회에서 가결, 시행했다. 이탈 리아의 경우도 한 일간지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어린이의 44%가 1주일에 1~30권의 미국만화를 읽는다는 결과에 충격을 받고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외국 특히 미국만화에 대한 법적규제를 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자국문화의 보호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또한 일반 언론보다 만화에 대한 감시가 더 엄격한데 이는 앞서말한 만화의 독특한 파 급력으로 인한 문화침투의 위험성 때문이다.

## 만화에 대한 법적 자율적 규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국가 국민의 기 본적인 권리이지만, 그것도 계약을 받는 분야 가 엄연히 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도 청소년·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엄격한 한계선이 존재하며 유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스포츠신문의 외설시비, 일본만화의 유 입문제 등으로 만화에 대한 법적제재문제가 여론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법적 규제는 당연히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측면을 지닌다. 법적규제란 곧 심의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 전심의회와 사후심의회가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만화는 인기에 영합하여 저속 퇴폐의 나락으로 휩쓸려갈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원천적 제 어장치로서 사전심의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순기 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고 현실적으로 시행 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다고 이미 유통되고 난 뒤의 사후심의회는 알다시피 만화의 정화에 별 기여를 할 수 없다.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가 현대사회를 특징 짓는 흐름이듯 만화분야에서도 힘이 나서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자율적 규제’는 만화를 제 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도 덕에 준하여 스스로 유해한 부분을 제거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양심보다 생존에 급급 해야 하는 빈약한 우리의 만화산업에 비취본

다면 아직 자율적 정화의지에 의존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여기서 잠깐 외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2차대 전 전후의 미국은 만화가 대중적인 오락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다. 아무런 제 재도 받지 않고 방만하게 표현의 영역을 광역 화해 가던 만화내용에 반기를 들고 투쟁에 나 선 것은 사회학자 프레드릭 윌샘 박사였다. 그 는 1954년 펴낸 한 논문에서 통제받지 않은 만 화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논리적 으로 지적, 그해 10월 처음으로 ‘미국만화잡지 협회윤리규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의 경우도 1950년대말 심각한 만화과동 을 겪었다. 1958년 열린 東京都議會에서 만화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을 도화선으로 그해 중 의원선거의 이슈로까지 이 문제가 등장했다. 선거운동이 한창 치열할 때, 한 여성후보가 트 럭에 산더미처럼 실은 외설만화를 국민학교 교정에 쏟아내놓고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불을 지른 일이 발생, 어린이 정 서에 끼쳤던 만화의 해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일이었다. 지금 우리의 심각 함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만화는 방송·TV와 같이 만인을 위한 만인 의 매스미디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규제는 법적·자율적 성격을 띠되 ‘자율적 강제규정’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심의기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의 만화는 반드시 사전심 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만화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 어 몇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용 만화와 미성년자용 만화의 이원화이다. 둘째, 만화문화의 자체 自淨기능을 유도하고 셋 째, 융통성있는 심의와 넷째, 항구적으로 단속 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첫번째 지적한 문제는 아동용, 청소년 용, 일반용, 성인용으로 좀더 세분하여 가시적 으로 판단되도록 기호나 부호 또는 문자로 명 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음성 적이고 불법적인 유통망을 조장하는 지금과 같은 일본만화의 유통에 몇가지 제언을 덧붙 인다. ▲일본만화의 번역·출판을 공식으로 허용하되 ▲반드시 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거 친 만화만을 유통하도록 하며 ▲우리의 가치 관이나 미풍양속 및 정신문화에 유해되는 내 용은 철저히 여과하도록 하는 점 등이다.